

# **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제안연월일 : 2013. 5.10

제안자 : 김도경 위원회

## **■ 수정이유**

- 개정되는 조례안 중 ‘귀농인’의 용어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‘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’에 명시된 ‘귀농인’의 정의를 함께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**■ 수정 주요내용**

-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“귀농인”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# **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“귀농인”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부칙	부칙
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·지원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본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제1조(시행일)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u></p> <p><u>7. “귀농인”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u></p>